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4. 9. 9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 :

○ 제 출 일 자 : 1994년 8 월 30 일

○ 회 부 일 자 : 1994년 8 월 30 일

3. 제 안 이 유 :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('93.7.31) 됨에 따라
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4. 주 요 골 자

가.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함.

- 충청북도지사는 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 (안 제2조)
- 충청북도민은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 사용자제,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배출 등의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도지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 (안 제3조)

나. 도지사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, 시행토록 함.

(안 제4조)

- 다. 도지사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권고·계도하고 제조자 등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. (안 제5조)
- 라. 도지사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·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, 보상금을 지급 (안 제7조)
- 마. 도지사는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, 보관장소 설치운영 (안 제11조)
- 바. 도지사는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시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명령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당해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않음.(안 제13조)
- 하. 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는 별표1의 과태료 부과 (안 제17조)

5. 검토 의견

○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,

'93. 7. 31자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

-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력장비 확보,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, 재활용단지 및 재활용시설 설치 등 도지사의 책무와
-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 사용자제,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
- 도지사는 제조자등에게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와 조치명령, 장려금 등의 지급,공유재산의 대부,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·보관장소 설치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으며,
- 제조자 등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토록

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력 향상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
- 타시도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상품이 본도에서 유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
- 시·군별로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·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 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업이 쓰레기분리사업처럼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해 놓은것을 쓰레기장에 버릴때는 마구잡이로 버리듯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
6. 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불 임